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조승래 · 맹성규 · 이주희
박용갑 · 황정아 · 김태년
장철민 · 안도걸 · 이정문
강준현 · 박정현 · 김영진
김 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

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조달평가위원단)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심의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심사
2. 제28조에 따른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 심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계약방식 또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의 제안서 평가 등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계 공모 심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

6.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선정과정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심의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중 이 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위원단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및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조달평가위원단)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심의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1. 제26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심사</u> <u>2. 제28조에 따른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 심사</u> <u>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계약방식 또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의 제안서</u>

평가 등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6.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선정과정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심의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중 이 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위원단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및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